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급통지 불능인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5일

동 탄 1 동 장



- 1. 공고대상자: 서0림 외 5명 (표참조)
- 2. 공고기간: 2024. 1. 25. ~ 2024. 2. 9. (15일간)
- 3. 공고방법: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

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
서 * 림	2007.01.06.	2024.02.01. ~ 2025.1.31.
이 * 희	2007.01.12.	2024.02.01. ~ 2025.1.31.
이 * 홀	2007.01.19.	2024.02.01. ~ 2025.1.31.
김 * 아	2007.01.28.	2024.02.01. ~ 2025.1.31.
심 * 엽	2007.01.28.	2024.02.01. ~ 2025.1.31.
김 * 린	2007.01.30.	2024.02.01. ~ 2025.1.31.

※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발급 신청기간 내에 화성시 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지참)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담당자: 권희진, 문의전화: 031-5189-4666)